

특허권의 제문제점과 이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조재신*

논문초록

본 논문은 특허제도의 기원과 산업혁명기에 있어서 특허권의 역할 그리고 특허권의 국제화에 이르기까지 특허제도의 변천을 알아보고, 오늘날 특허제도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본 후에 공익적 관점에서 특허제도의 본질과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한 자에게 인센티브로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특허법에서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제도가 그 목적의 범위를 일탈하여 특허권의 남용과 오용으로 인하여 장점보다 폐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특허제도를 하나의 경제행위로 보고 경제행위가 사랑에서 기인해야 한다고 하는 시각에서 본 논문을 시작하였다. 특허제도를 기독교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특허제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전통적 경제학이 현대의 특허제도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으므로 특허제도에 있어서 규범적 요소들을 고려한 새로운 재조명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제어: 특허제도, 특허권, 특허 존속기간, 특허괴물, 성경적 경제

* 전남대학교 융합기술학부 교수, 종교문화연구소

2014년 6월 16일 접수, 7월 21일 최종수정, 7월 30일 게재확정

I. 서론

인간의 정교함은 자연보다 더 정확하고 더 단순하고 더 아름다운 발명품을 만들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발명품은 결코 결핍되거나 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발명품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주어 더 많은 발명을 유도하자는 인식이 기원전 그리스에서부터 있어왔다. 15세기에 이르러 베니스 공화국에 의해 성문특허법으로 제정되어 새로운 기계에 대하여 10년 동안 타인의 제작을 금지하게 되었다. 이후 영국에서 근대성문법으로 제정되면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허법을 제정하여 특허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20년¹⁾ 동안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제도는 현대에 이르러서 독점권의 형성, 특허권의 남용 등 많은 폐단을 낳고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창세기 1:27)”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발명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인데, 발명이 특허라는 제도로 사욕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

성경에서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인 제1계명~제4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마태복음 22:37-38)”에서처럼 신적권위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인 제5계명~제10계명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9)”에서와 같이 우리 가족과 이웃에 관한 계명이다. 아담스미스가 인간의 경제활동은 십계명에서 제5계명~제10계명에 해당하며, 경제행위의 동기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을 사랑하게 되므로, 경제행위는 자아사랑과 이웃사랑 간의 균등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Adam Smith, 2012: 37)고 주장한 것처럼 인간의 경제행위는 나와 이웃을 위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

1)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때로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에 의하여 2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특허법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참조.

이다. 오늘날의 경제행위에 있어서, 아담스미스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야 함을 지향하는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인 이웃사랑은 현대에 이르러 사라지고 없고, 오로지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이기심만이 경제행위를 주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단체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웃과 사회 그리고 주변의 빈민국·개도국의 이익은 외면하는 비성경적인 행위를 자연스러운 경제행위로 여기고 있는 특허제도에 대하여 기독교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관계상 특허에 대한 장점은 수없이 많이 있으므로 장점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특허에 관한 제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어 특허에 대한 존속기간이 현재 20년으로 되어 있어 지나치게 존속기간이 길어 사회적 폐단이 발생하므로 존속기간을 6년~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II. 세계 각국의 특허제도 태동과 산업혁명

인류의 문명과 함께 발전해 온 특허제도는 B.C. 6세기 고대 그리스의 도시 시바리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의 지식재산권은 그리스의 도시 시바리스에서 요리 고안자에게 1년간 독점권을 부여하였으며 이는 통치자의 은혜의 수단이었다.

중세유럽에서는 상공단체인 길드(Guild)가 영업비밀과 비조합원의 제품판매금지 등 강력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불만인 영주들이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한편, 르네상스 운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15세기 이탈리아의 베니스 기술자들은 자신의 발명이 공개될 경우 발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릴까 우려하여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암호 등 타인이 알아보기 힘든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이후 새로운 발명이 비밀로 숨겨져 있는 기술 등 지식의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장되었고, 마침내 1474년 베니스공화국은 특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새롭고 창의적인 장치를 잠재적인 침해자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국가에 신고해야 했으며, 보호기간은 10년이었다(이철희, 2010: 138). 이 법령은 모직물공업을 제도적으로 보호하였는데, 명주실을 만들어 내는 기계나, 개량기술을 고안한 사람에게는 10년간 그 발명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1594년 물리학자, 갈릴레이 갈릴레오(1564-1642)가 발명한 양수용 기계가 이 법에 의하여 특허가 허여되었다(김원준, 2012). 베니스 특허제도의 내용을 보면 특허등록요건(신규성, 진보성 등), 권리존속기간, 침해, 보상 등 오늘날의 특허법 근간이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베니스 공화국의 몰락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다.

현대 특허제도의 기초가 된 최초의 성문화된 특허법은 1624년에 제정된 영국의 전매조례(독점법)(The Statute of Monopolies)이다. 당시 영국은 길드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은 영국 내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 국왕은 왕권을 행사하여 대륙기술자가 안전하고 자유스럽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특허에 의한 특권을 부여하였다. 이 전매조례는 최초의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해 14년간 독점하도록 한 것이다. 영국이 특허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17세기 초, 대륙의 유럽국가에 비하여 공업기술의 후진성을 면치 못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스위스는 시계 공업과 철 가공업이 발달하였고, 영국은 이 기술을 도입하기를 원했으나 스위스 기술자들이 기술을 공개하기를 꺼렸고, 그러한 기술들은 영업비밀(Trade secret)로 보호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engineering)하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영국은 특허장(Letters Patent)을 부여하게 되었고, 오늘날 특허법에 해당하는 전매조례로 발전시게 되었다. 이 법이 선포되자 강력한 독점권을 기대한 유럽대륙의 기술자들은 영국으로 몰려들었고 독점권을 얻는 대가로 그들의 노하우를 문서로 공개하였다. 기술자와 이들이 가진 기술이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이를 바탕으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 18세기에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이철희, 2010: 138).

독일은 1887년에 특허제도 뿐 아니라 세계에서 최초로 1891년에 실용신안제도를 제정하여 기술이 발전한 국가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독일이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 비해 기술이 뒤떨어져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지된 기술을 간단하게 개량하여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장려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이후 독일의 실용신안제도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일본에서 도입하게 되었고, 일본의 실용신안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은 영국의 특허법을 사용하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1787년에 헌법에 “저작자와 발명가에게 일정한 기간 그들의 저작 및 발견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

로써 과학 및 실용 학문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명시하였고, 이어 1790년 특허제도를 제정하였다(吉藤幸朔, 2005). 그러나 미국의 초대 특허청장이자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특허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1952년에는 특허 등록을 위한 요건으로서 비자명성(Non-obviousness)의 개념을 도입하여 현대적인 특허법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후 디자인특허(Design patent)와 식물특허(Plant patent)도 특허제도에 편입하였다. 특허의 대상도 점차 확대하여 1980년에는 미국연방대법원은 다이아몬드 vs 차크라바티(Diamond vs. Chakrabarty) 사건 판례에서 기름을 분해하는 미생물에 대한 특허를 허락하면서 “인간이 해 아래에서 만든 모든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Anything under the sun made by man is patentable).”는 유명한 문구를 남겼으나, 이 판례는 미국특허청 뿐 아니라 전 세계 지식재산권 관련자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1882년 지식영의 상소문에서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여 새로운 서적을 구입하고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기기들을 도입·설치해야 하고, 젊은이들을 선발하여 과학기술 교육을 받게 하고, 이들 가운데 기계를 만들거나 발명하는 재능이 있는 자에게는 전매특허권을 주도록 하여 과학기술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의 정국불안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후 1908년 8월 일본에 의하여 ‘한국특허령’ 등이 칙령으로 공포·시행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시초가 되었으며, 해방 후 1946년 10월 우리나라 독자의 「특허법」이 제정되었다.

이상과 같이 특허제도는 산업혁명을 이끄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19세기에 들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며 점차 산업발전에 있어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기업 활동에 있어서 기술혁신과 경쟁 수단, 기업전략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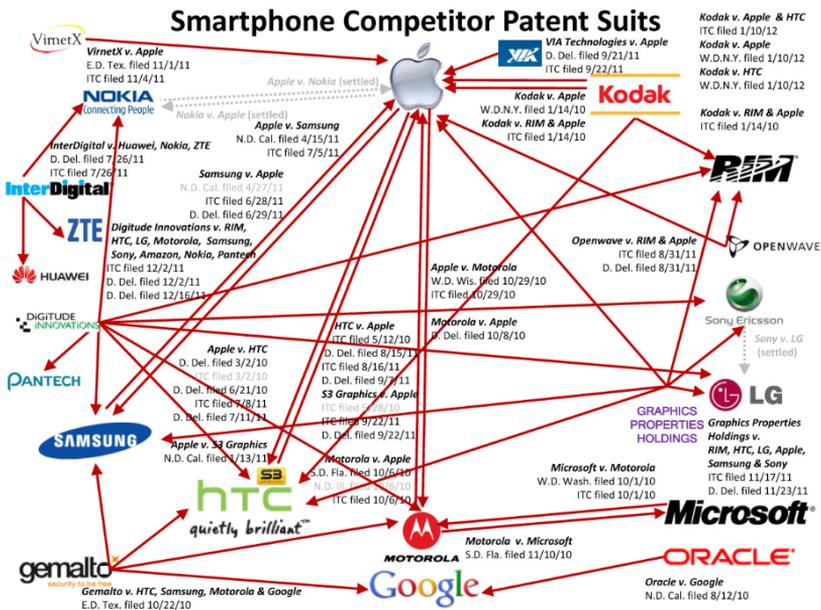
III. 특허제도의 제문제점

1. 특허분쟁

삼성-애플 특허분쟁을 분석해 보면 삼성-애플은 전 세계 9개국 12개 법원에서 50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는 삼성의 승리,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은 애플의 일방적 승리였다. 이 소송은 현재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양사가 일진일퇴의 공방 진행 중에 있다(이두형, 2013: 78).

그림1은 전 세계의 스마트폰 특허소송에 관한 그림이다. 한 개의 기술 분야에서 특허에 관한 분쟁이 거미줄보다 더 복잡하게 얽히고설키어 있다. 차라리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거미줄이 더 단순하다. 이처럼 전 세계의 기업들은 특허를 중심으로 수많은 특허분쟁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기업의 생존을 위해 M&A를 통한 원천특허 확보 및 기업 간 연합전선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허분쟁에 대한 한국 정부는 기업과의 정기적 모임, 지식재산권 전략세미나, 분야별 특허연구회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분쟁 동향 등 정보를 공유하며 특허동향 및 분쟁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관리의 중요성을 기업에 전파하고 있다. 또한, 지적권 분쟁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식재산권 분쟁단계에 따른 맞춤형지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마련된 범부처적인 대책추진 등 막대한 정책적 대응에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다.



〈그림 1〉 스마트폰 특허소송

(<http://www.ritholtz.com/blog/2012/04/smartphone-patent-battles/>)

한편, 1976년 폴라로이드는 즉석카메라 관련 특허 12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코닥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고, 16년간의 긴 소송 끝에 폴라로이드가 승소했다. 당시 폴라로이드사의 매출액은 2억불에 지나지 않았지만, 패소한 코닥사는 손해배상금 8억 7천 3백만 달러, 약 15억 달러를 들어 투자한 생산공장 폐쇄 등 34억 8천 3백만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가져왔고, 7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해고하였다(배진용, 2008: 18). 그러나 그 이후 폴라로이드는 2000년대 초 파산보호신청을 했고, 급기야는 코닥도 2012년에 파산보호신청을 하였다.

최근의 특허소송은 제품의 혁신과 개발보다는 특허소송에 쏟은 비용이 과거보다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눈에 보이지 않는 특허전쟁이다.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다. 얼핏 보기에는 승자가 이긴 듯 해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정치적·군사적으로는 이겼으나, 그 후 미국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였고, 이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0%를 넘었으며, 실업률은 약 2배로 증가하였다(N. Gregory Mankiw, 200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분쟁으로 정부는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기업은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특허제도를 약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더욱 특허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제도를 강화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고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2. 특허괴물(NPE)²⁾ 출현

기업들이 기술의 혁신과 발전보다 특허를 무기삼아 시장에서 경쟁기업을 압박하고 있으며, 특허괴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허괴물은 1980년도 미국 레이건 정부가 프로 특허(Pro-Patent) 정책으로 특허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출현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특허전문 조사기관인 페이턴트프리덤(PatentFreedom)의 자료에 의하면, 2011

2) 특허괴물을 Patent Troll이라 하며, NPE(Non-Practicing Entities) 또는 PAE(Patent Assertion Entities)이라고도 불린다. 즉, 특허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특허권만을 행사하여 수익을 얻는 특허전문 회사를 말한다. 이들 회사는 대학, 연구소, 개인발명가들로부터 돈이 될 만한 특허들을 매집하고, 이들 특허권으로 제조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수익을 얻는 특허전문 회사이다.

년 약 300개였던 특허피물은 2013년 1월 기준 680개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특허청, 2013: 95). 특허피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다. 2012년 애플이 특허피물에 의하여 44건의 특허소송을 제기당하여 1위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삼성이 37건(2위), LG가 24건(3위)의 특허소송을 제기 당하였다. 특허피물에 대한 방어 사업을 하는 미국의 RPX사 발표에 의하면(Chien, Colleen V., 2013: 1), 2012년 4,701건 중에서 2,921건으로 62%가 특허피물에 의하여 소가 제기 되었다. 2010년도에 특허피물에 의한 특허소송이 약 730건이던 것이 2012년도에는 약 2,900건으로 2년 사이에 약 4배 정도가 늘어났다. 특허피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거나 소송을 당한 기업은 2012년 한 해에만 약 100,000개로서, 특허피물은 소송상대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가리지 않는다(특허청, 2013: 96).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이 링 위에서 챔피언과 도전자로 1, 2위를 다투는 가운데 시장점유에 어려워진 노키아는 스마트폰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특허피물(NPE)로 변신하였다. 당초 노키아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를 다른 특허피물이 매입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애플은 모토로라의 반도체 칩 개발기업인 프리스케일의 특허를 인수하고 MS와 컨소시엄을 이뤄 파산한 캐나다 네트워크업체인 노텔의 특허를 인수한 후에 특허피물인 ‘록스타비드코’를 설립하였다. 구글은 모토로라의 휴대폰 사업 부문인 모빌리티를 인수하고 IBM 특허를 매입하였고, 삼성은 영국의 GPS 및 블루투스 칩 개발 기업인 CSR을 인수하였다.

이와 같이 대기업들은 서로 간에 설치해 둔 특허지뢰밭을 피하기 위해 특허매집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 세계의 기업들은 특허피물을 중심으로 수많은 특허분쟁이 진행 중에 있다. 예전에는 특허피물이 로열티를 요구해오면 최소한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었지만, 현재는 특허피물의 자회사가 많아 자회사 뒤에 숨겨진 실제 특허피물이 누구인지도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며,³⁾ 또한 특허피물은 여러 분야 보다는 한 분야를 집중 공략하기 위해 전문화되어 있어 점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3) 일부 특허피물은 1년 새 자회사를 300여개 이상 늘리기도 했다.

3. 인류의 건강권과 의약품 관련 특허

일반적으로 강력한 특허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예를 드는 것이 의약품 특허이다. 즉, 의약품은 신약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이는 아무도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개발비는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주장하여 알려진 바와 그 실상은 많은 격차가 있다. 통상적으로 신약개발에는 8억 달러가 소요되며, 개발기간은 10~1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tamonitor, 2010. 현병환, 2012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수치에 대한 근거는 제약업체의 주장만이 반영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제약업체에서 주장하는 신약 연구개발비는 8억 달러이나, 총 연구개발비 대비 출시된 신약 수, 자체 신약 개발 비용 등을 고려하여볼 때, 실제 신약 당 연구개발비는 약 1.2~1.7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제약회사가 주장하는 신약 당 연구개발비 8억 달러의 약 1/5~1/7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현병환, 2012).

제약기업들은 특허권을 신약의 혁신성에 대한 보상이라며 그러한 보상이 없이는 신약개발의 동기를 얻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현재의 특허제도는 제약회사가 기술발전의 방향을 왜곡하고 기술 확산을 막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변질되었다. 한 예로,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에 따르면(<http://darytalks.tistory.com/category/%EC%9D%98%EB%A3%8C%EB%AF%BC%EC%98%81%ED%99%94%EC%99%80%20%EB%8C%80%EC%95%88>), 1995년 당시 전 세계 매출 상위 5가지 의약품의 연구개발과정에서 77~95%가 공적부문의 기여로 이뤄졌음에도 공적기여로 이루어진 이들 의약품이 특허권을 획득하여 사유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새로 개발된 신약이라고 해도 기존약보다 치료효과가 항상 더 나은 것은 아니다. 2001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보고서에 따르면(A research report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Care Management Research and Educational Foundation, 2002: 8), 1989년~2000년 사이에 미국에서 허가된 신약 중 기존치료제보다 나아진 효과를 보인 약은 24%에 불과하다. 제약회사는 더 나은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개발하기보다는 유사약품(me-too drug) 개발이나, 기존 약물의 사소한 변경에 치중하며, 이러한 사소한 변경에 대해서도 특허를 얻을 수 있도록 각국의 특허제도를 바꿀 것을 다자국간의 협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이나 양국 간의 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강요

하고 있다(권미란, 2009: 103-104).

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보건의에 직결된 제품으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AI 사태에서도 로슈의 ‘타미플루’ 독점으로 전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을 경험한 바 있다.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로 병균의 고통으로부터 덜어주고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기여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페니실린은 특허조차 받지 않았다.

인류의 건강권이 재산권으로 행사되고 있는 특허권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제도는 제약회사가 생명의 귀중함을 담보로 공익보다는 사익을 정당화하는데 강력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이 경제적인 이윤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며 한미 FTA 체제에 들어 간 우리에게 의약품 관련 특허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4. 특허제도 유지를 위한 비용과 특허제도로부터 창출된 이익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2차 특허소송에서 데이터 태핑(647특허)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스마트기기 한 대당 12.49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애플이 동일한 특허(647특허)로 모토로라에 스마트 기기 한 대당 0.6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 배상액의 20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서, 삼성에 대한 애플의 총 손해배상 요구액이 20억 달러(약 2조1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특허권으로 인한 대가가 R&D 투자비용과 얼마나 무관하게 책정되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즉,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당해 특허권을 얻기 위해 발명을 하기 위한 R&D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며, 이는 특허권이 사회적인 일반 가치기준을 넘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제도는 특허피물로 인한 분쟁위험이 날로 증대하면서 기업의 특허소송 및 특허매입 비용이 R&D 비용을 초과하는 등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허피물에 의한 비용 발생 규모를 보면 ‘특허피물’이 받는 중간값(Median) 손해배상액 규모가 점차 증가하여, 2005년~2011년에는 ‘특허실시기업’의 중간값 손해배상액(370만 달러)보다 약 2배에 달하는 69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1년의 경우 소송비용 및 합의금액을 포함하여 특허피물과 관련된 소송의 직접비용은 2005년

부터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292억 1,300만 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어 소송 직접 비용 증가율이 약 4.5배로 조사되었다(임윤혜, 2003: 1-4).

일본 은행은 일본기업이 특허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를 나타내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2013.4월~2014.1월에 1조 6000억 엔 흑자로 전년 동기대비 두 배 증가하여 2013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1조 엔을 초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http://www.nikkei.com/article/DGXNZO68681150S4A320C1NN1000/>). 반면,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기술무역 적자 국으로서 국내총생산 대비 전체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4.03%로 세계 2위이지만 원천기술 및 표준특허 부족 등으로 기술경쟁력은 주요국 가운데 사실상 최하위이다. 우리나라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로 특허수를 보면 경쟁력 있어 보이지만 영향력이 있고 가치 있는 특허는 상대적으로 적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 체제하에 있을 당시에는 영국의 특허법을 사용하였고, 당시 특허법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산업발달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다. 개발된 모든 기술이 특허라는 이름으로 보호되고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내야만 국가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명제는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한국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허제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정책적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IV.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재조명 및 기독교적 접근

1. 발명은 어디에서 오는가?

창의성에 관한 많은 연구 중 갤라퍼(Gallagher)는 창의성을 문제가 있거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구상해 내는 힘이라고 하였다(James J. Gallagher, 1975). 아마바일(Amabile)은 창의력은 내적 동기, 영역 관련 지식과 능력 등의 기능들이 결합해서 발생된다고 하였다. 그는 내적 동기는 일과 작업에 대한 열정, 사랑, 의지, 흥미, 도전감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떤 문제나 과제를 수행할 때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내적동기가 충만한 상태에서 창의적으로 사고를 하면 창의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Teresa M. Amabile, 1983). 크루치필드(Crutchfield)는 창의적 해결책을 달성하는 일이 목적 자체라기보다는 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때 외부동기라고 부르며, 이와는 반대로 그 목적이 창의적인 해결책 자체를 얻는 것에 있을 때 내부동기라고 하였다. 또한 “내적동기”를 이행되는 업무의 흥미와 즐거움에 기반을 두고 노력을 들이는 욕구라고도 한다. 그는 “외부동기”가 작용할 때 보다 “내적동기”가 작용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Richard S. Crutchfield, 1961).

이와 같이 “내적동기”는 작업 자체에 대한 도전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게 하며, 외부로부터 기대와 동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만족으로 인해 일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이다(이기영 외, 2013: 105). 외적인 환경보다는 내적인 즐거움으로 인해 보다 창의적으로 일에 몰두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창의력은 외적인 반대급부가 반드시 없이도 스스로 내적인 즐거움으로 인하여 발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팀 하포드(Tim Harford)와 강유리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혁신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져가며, 중요도가 높고 비용이 많이 드는 혁신의 경우 시장은 특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혁신에 특허가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특허는 아이디어의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한다는 기본적인 발상은 타당하며 이것은 애초에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그 독점권 부여에 따르는 비용보다 더 클 거라는 기대에서 이다. 그러나 특허가 실제로 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하였다(Tim Harford·강유리, 2011). 또한, 매트 리들리는 발명가들이 발명을 하도록 부추기는 실질적 요인이 특허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대부분의 중요한 혁신은 전혀 특허를 받지 않았다. 19세기 후반 네덜란드나 스위스는 특허 제도가 없었지만 발명가들을 끌어들이고, 이들은 거기서 꽃을 피웠다. 그리고 20세기의 중요 발명 중에는 특허를 끝내 받지 않은 것이 대단히 많다. 자동변속 장치, 베이클라이트(합성수지의 일종), 볼펜, 휴대전화, 셀로판, 입자가속기, 회전나침반, 제트엔진, 자기기록기, 파워스티어링 기계, 안전면도기, 지퍼 등이다.”고 하였다(Matt Ridley, 2010).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불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

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출애굽기 35:30-32)”,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출애굽기 35:34-35)”라는 말씀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기록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열왕기상 3:6)”, “내가 네 딸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열왕기상 3:12)”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브살렐, 오홀리합,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다. 창의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2. 특허권의 본질

특허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보호의 형태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조는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의 초대 특허청장이자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은 1813년 “발명은 본래 재산이 아니다. 사회는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독점적 권한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회의 의지와 확신에 의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거기에 어떤 이도 주장이나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권미란, 2009: 101). 그로부터 170년 후 1983년 미 연방순회법원은 “특허권은 단지 ‘재산’처럼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권리다.”고 선언하였다. 특허가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행정부측면에서 특허권은 정부의 권한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며, 둘째, 사법적 측면에서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침해 시 최대 3배의 배상을 해야 하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특허법은 개인주의적인 재산권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특허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기본권설(자연권설)과 산업정책설, 무체재산권설이 있다. 기본권설은 창작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창작자의 인격적·경제적 권리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산업정책설은 창작된 지식의 결과에 대하여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피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이론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며, 무체재산권설은 유체물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무체물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기본권설(자연권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자신의 노동에 의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자본주의 및 실용주의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데(나종갑, 2005: 31-32), 이는 지식재산권의 천부인권적 권리의 재확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정진근, 2008: 4). 이 설은 1791년 프랑스 특허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모든 신규사상은 최초 이를 창작해 낸 창작자의 소유이므로 그 창작자의 재산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은 1878년 파리만국공업소유권보호동맹조약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발명자나 산업상 창작자의 작품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이다.”라고 하여 채택되었다(吉藤辛朔, 2005).

산업정책설은 특허법의 발전이 외국자본의 유치와 신기술 개발을 위해 이루어져 왔으며, 특허권이 비밀공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독점배타권이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지되어 왔다. 이러한 태도는 산업발전의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의 목적과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손경한, 2005). 이와 같은 산업정책설의 견해에 의하면, 특허권은 그 본질로부터 공공의 이익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한다(Cedric A. D'Hue, 2006: 145).

최근 가장 유력한 설은 무체재산권설로서 특허권은 근대 문명 하에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된 무체재산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권리이고, 시간적으로 유한하며, 각국에서 별개의 권리가 부여되고, 형체상의 존재를 갖고 있지 않다는 학설로서 이 설이 발표된 이후로 대륙을 휩쓸어 오늘날의 통설이 되고 있다(Adam Mossoff, 2007: 1000; 손경한, 2005: 12). 즉, 무체재산권설은 자연권설에 영향을 받아 발명자의 발명은 정직한 노동의 열매로 그가 경작한 곡식과 같이 발명자의 소유가 된다고 하였다. 왕권의 행사로 부여되어 영업특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초기의 특허권은 근대 자연권설의 영향으로 특허발명이라는 무체물을 전면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개인의 강력한 권리가 되었고, 그 침해에 대하여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에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심미랑, 2011: 105).

이상의 상기 학설들은 모두 자연법사상에 바탕을 둔 기본권설·무체재산권설과 산업주의에 바탕을 둔 산업정책설이고,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학설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허제도를 경제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크라벤담은 하나님의 영적인 측면이 어떻게 경영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영의사 결정에서 먼저 영적인 면과 인본주의적인 면이 서로 양극화 된 상태로 분리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하나님의 법에서 자연법으로의 전환 그리고, 자연법에서 실증법으로의 전환이라는 두 단계를 거치면서 이러한 단절의 과정이 생겼다고 말한다(Hendrik Krabbendam, 1989). 단절의 과정은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에 거역하는 새로운 인식이 들어왔으나, 이러한 인식은 인간의 뜻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동기 위에 있으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으므로 인간의 자기중심적 자아를 강화시킨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리를 일으키며 분명히 그 원인은 죄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 대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라는 죄로부터 윤리의 법이 등장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윤리의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죄이다. 르네상스를 맞으며 인간의 사고체계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었다.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버리고 인본주의적 윤리의식이 점점 확대되었다.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광범한 지식이 축적되고 분류되어 만물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대신 자연을 탐구하고 분석하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급격하게 확대되어 자연법적 질서의 원리들을 규명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리가 쇠퇴하고 과학적 지식이 팽배하게 되었으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단지 자연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우주 만물이 자연법적 질서를 따르는 것으로 해석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었다. 산업화 시대에 이르러 인간의 과학적 지식은 기계문명의 발달을 낳았고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주었다. 사회발전 과정의 경제영역에서 자연법적 원리를 적용하여 인간이 경험하게 된 규칙과 현상들을 규범화하여 사회통치의 모델로 만들었다. 따라서 현대경제학의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성, 도덕성 등이 모두 제거된 학문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현대경제학이 소위 '과학'이 되기 위해 포기한 것이다. 성경적 경제학을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 통치 수준으로 그 위상이 회복되어야 한다(황희영, 2009: 278-279).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때 특허제도는 하나님의 통치수준으로 나아가야 하며,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본 절의 서두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특허법의 목적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산업정책설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무체재산권설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심미랑, 2011: 96; 김원준, 2013: 57;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광민섭, 2009: 41-42). 특허권이 무체재산권설로 기울어진 결과 창작된 지식의 산출물에 대하여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꾀하는 공익적 차원보다는 전면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개인의 강력한 사익으로서의 권리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창작된 지식의 결과물이 하나님의 통치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산업정책설과 무체재산권설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정책설은 이미 하나의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게 되었고, 무체재산권설은 지나치게 독점권을 행사하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의 본질에 대하여 성경적 접근을 시도해 본다.

과거 자본주의 제1기, 즉 자본주의 1.0은 ‘자유방임 자본주의’였고, 제2기(2.0)는 ‘사회민주주의’와 ‘복지자본주의’, 제3기(3.0)는 ‘신자유주의자본주의’였다. 자본주의 4.0은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 이론경제학과 정치이데올로기의 해로운 상호작용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고, 정부와 시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만 강조했던 이전 시대의 경제인식과는 달리 정부와 시장이 모두 잘못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치와 경제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http://www.theguardian.com/books/2010/jul/25/capitalism-4-anatole-kaletsky>). 창조적인 자본주의를 ‘이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법론이라면, 이와 비슷하게 자본주의 4.0도 경제와 정치의 협력 통하여 사회전체 비용의 최소화와 소외계층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볼 때(김홍섭, 2014: 96), 현대의 특허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과 소요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가 되도록 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특허권의 본질을 성경적 관점에서 청지기설로 보고자 한다.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출애굽기 19:5; 레위기 25:23)”라고 하셨다. 그것이 생명이든지 유형물이든지 무형물이든지 불문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출애굽기 20:17)”고 하여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셨고, 신명기에서도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

을 것이라(신명기 27:17)”고 하여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였다. 특허법은 발명자에게는 명예권이 주어지고, 특허출원인에게는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이 주어지는 실정법이다. 지식활동의 산물인 무형의 재산권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무형의 소유권에 대한 성경적 입장은 로마서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로마서 15:20)”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사도바울이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 위에 자신이 무형의 소유권인 목회권을 갖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로마서에서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로마서 15:27)”고 하여 영적인 소유에 대하여 무형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잠언에서 지식에 대하여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고 하였으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잠언 24:4)”고 하여 무형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유형의 소득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특허권이라는 개념은 세계 각국의 특허제도 태동과 산업혁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허권을 위탁받은 자로서의 소유권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마태복음 20:8; 누가복음 12:42)”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사명감을 가지고 소유물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3. 특허권의 한계

특허권은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실시, 국제교통기관의 운행상 필요한 발명,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조제행위 등 타인의 실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자기의 발명이면서도 이용발명이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이른바 법률상 한계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발명자의 권리를 공익을 위해 제한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공익상의 한계가 있다. 예컨대, 공서양속·공중위생을 해치는 발명, 국민의 생명·건강, 재산의 보전, 공공시설의 건설, 국민의 생활에 직접 관계하는 공공적 산업, 해당발명을 긴급히 그리고 널리 실시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예로,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발명을 대량으로 신속히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만약,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산업을 억압하고, 공공이익에 반한다면 굳이 특허대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 특허대상으로는 하지만 발명의 보호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공이익과의 조화를 꾀하는 것도 필요하다. 거의 모든 국가의 특허법에서 어떤 종류의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는 것을 금하고, 또 독점권으로서의 특허권의 효력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이상과 같은 이유이다. 또, 특허발명의 실시가 적당치 않은 경우는 물론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적당치 않기 때문에 산업발달을 해치고 공공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일정한 의무·제도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도 당연하다(吉藤辛朔, 2005). 특허법에서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을 규정(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하고 있으나, 특허청에 의하면, 특허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도 의약품 강제실시권을 발동한 적이 없다(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8008&catmenu=m06_04_05).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세계보건기구(WTO)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필수약품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국경없는 의사회는 베르나르 페쿨은 “특허권은 신이 내린 권리가 아니며, 특허권은 사회 전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소수의 다국적 제약기업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최민영, 2005: 1).

특허권의 한계에 대한 벽을 허물기 위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자연은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통해 주신 실험실이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기독교학인은 자신의 실험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길 기대해야 한다. 단지 자신의 유익과 남을 해하려는 실험은 비극을 낳게 된다. 인간이 만든 작은 실험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만든 우주라는 실험실에서도 벌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기본 정신을 해치고 창조의 결과물인 특허가 남용되거나 사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이춘성, 2008: 5). 과학과 종교를 철저히 분리한 과학자인 파스퇴르처럼 “실험실에 들어갈 때 나는 기독교란 가운을 옷장에 벗어 놓는다.”고 해서는 안 되며, 기독교학인은 성경적 입장에서 실험실에 들어갈 때도 기독교란 가운을 입고 들어가야 하며, 그 결과물인 특허는 투자비를 회수한 이후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독점과 분쟁으로 차단고 있는 특허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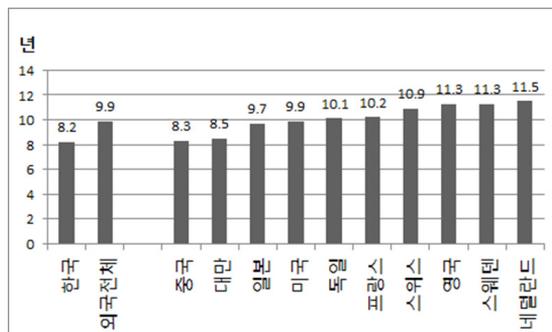
대한 한계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4. 특허수명과 기술라이프사이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이며, 농약이나 의약품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과, 행정청의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이 있는 경우는 연장된 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길어진다.

우선, 특허권의 평균수명에 대하여 알아본다. <표1>은 2005년 한국의 특허동향에서 발표된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국가별 특허권의 평균수명이다(특허청, 2005).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내국인의 평균특허수명은 8.2년이고, 외국인의 평균특허수명은 9.9년으로 외국인이 1.7년이 더 길다. 이로 볼 때 전체적인 평균특허수명은 20년에 훨씬 못 미침을 알 수 있다(조재신, 2012: 67).

전송표 등은 미국특허분류(USPC) 178에 해당하는 전신(telegraphy) 기술군으로 등록된 특허 중 1회 이상 인용된 6,393개의 특허를 대상으로 연차별 평균 인용빈도를 분석하여 인용특허수명을 산출한 결과(전송표 외, 2012: 758) 연차별 인용빈도수는 3~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며, 이러한 동향은 유선휘 등의 선행연구 결과(유선휘 외, 2006: 6) 와도 일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전신(telegraphy) 기술군에 해당하는 특허의 평균수명이 7.7년이라고 제시하였다(이성상·임소진, 2013: 43).



<표 1>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국가별 특허권 평균수명(특허청, 2005)

다음은, 기술라이프사이클, 즉, 기술의 평균수명에 대하여 알아본다. 기술의 평균수

명은 2007년 특허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심사처리기간단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조운애 외, 2007: 80)에 따르면 제조업부문 단순 기술평균수명은 7.61년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기술보증기금에서 분석한 대표기술군의 기술수명주기는 6년으로 나타났다(김상국·박현우, 2012: 71).

이와 같은 조사결과로서 특허의 평균수명과 기술라이프사이클은 서로 근접함을 알 수 있으며, 모두 6~10년 이내임을 알 수 있다.

5.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성경적 재조명

19세기 후반에 60개국의 평균 특허수명이 13년이었던 것이 20세기에 들어서 WTO에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에 20년의 특허보호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세계적인 표준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20년의 특허보호기간이 그보다 짧은 보호기간보다 낫다는 경제이론은 없다(Chang Ha-Joon, 2007). 오히려 현대는 산업혁명 시대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경우 종래 1년6개월에서 3년까지 가던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3개월~6개월로 단축되었다(SuziePark, 2004: 1). 기술보증기금에서 분석한 대표기술군의 기술수명주기는 6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령,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특허로 공개(특허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가 됨) 되지 않고 노하우로 기업에서 영업비밀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6년이 지나면 다른 개발자가 그러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에는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소유권이 있으며, 지식재산은 무형의 소유권 중의 하나이다. 지식재산은 땀과 수고의 산물인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이므로 무형의 재산을 타인이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사용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앞의 “2. 특허권의 본질”에서 특허권의 성경적 소유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성경의 안식년과 희년 규례에 나타난 사상을 통하여 특허권이라는 소유권의 행사에 대하여 조명하여 본다.

(1) 토지경작에 관한 규정

출애굽기에서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출애굽기 23:10-11)”고 하고 있으며, 레위기에서도 “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레위기 25:3-5)”고 하고 있다. 안식년에는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쉬어야 하고, 휴경(休耕) 동안에는 종, 가난한 백성, 나그네가 그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6년이 지난 후 7년째에 심지도 않고 소출을 거두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는 데에 족할 것이라고 하셨으며, 8년째에는 새로운 씨앗을 뿌려 파종을 하되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고, 9년째에 그 토지에서 경작한 소출의 결실을 먹을 것이라고 하셨다(레위기 25:20-22). 레위기에서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레위기 25:18-19)”고 하신 것이다.

(2) 노예 해방에 관한 규정

출애굽기에서 종을 대우하는 법에 대하여 출애굽기에서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출애굽기 21:2)”, 또 신명기에서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신명기15:12)”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에 시드기야 왕이 노예를 자유롭게 하였다. 그러나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예를 다시 노예로 삼았다. 이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중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너희에게 팔려 왔거든 그 노예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으므로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나타난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칠 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육 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예레미야 34: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과 기근이 임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넘겨지게 되어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며, 성이 불살라져서 유다의 성읍들이 주민이 없는 처참한 황무지가 된다.

이사야서에서는 부에 부를 더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차례로 사들이는 자들이! 빈터 하나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혼자 살듯이 차지하는 자들이!(공동번역, 이사야 5:8)”. “포도밭 열흘4)같이에서 술 한 항아리밖에 나지 아니하고 종자 한 섬에서 곡식 한 독이 가까스로 나리라(공동번역, 이사야 5:10)”(임태수, 1991: 106-107).

(3) 빚 면제에 관한 규정

신명기에서 빚을 면제해 주는 해에 관련하여 “매 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신명기 15:1)”고 규정하고 있고, 레위기에서 희년에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 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레위기 25:35-37)”고 규정하고 있다.

안식년과 희년 규례에 나타난 소유권에 대한 원상회복의 목적은 어떠한 이유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평등 공동체로 출발했던 정착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 다시 시작(Reset)하게 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평등 상태를 영속하려는 것이 안식년과 희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안식년과 희년은 매 7년, 49년5)마다 실시하라는 법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매달, 매년을 희년 정신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법이다. 안식년의 휴경법이 일시적인 빈민구제법이라면, 희년의 토지 소유 원상회복의 또 다른 목적은 소수가 토지를 독과점하지 못하게 하고, 원경작한 농민에게 토지를 되돌려 주는 데 있다(임태수, 1991: 109-110).

성령 강림 이후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경제면에서 새로운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예레미야 등에 기록된 구약의

4) 성경에서 10일은 일정한 만수적인 기간으로 나온다(창세기 31:7; 다니엘 1:12-15; 요한계시록 2:10).

5) 희년이 49년째인지, 50년째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여기서는 임태수(임태수, 1991: 108)의 견해를 따라 표기한다.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사도행전 2:44)”,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사도행전 4:32)”. 신약에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제적으로 자발적인 헌신과 나눔으로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안식년의 규례와 희년의 규례를 실천한 것이었다(사도행전 4:34) (Wright, 2010: 381). 그러는 한편, 디모테후서에서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디모테후서 2:6)”고 하고 있어 소유권에 대한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난 안식년과 희년 정신의 실시 여부는 권력을 가진 자 예컨대, 선진국과 거대기업들이 열쇠를 쥐고 있으며, 이들에 동조하거나, 또는 동조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 기업들이 실천하려는 의지에 달려있다. 사울이 정권을 잡은 이후 권력은 점점 중앙집권체제가 되어 갔으며 경제력도 일부 상류층에 집중되어 갔다. 마찬가지로 현대사회도 점점 중앙집권체제가 되어가고 있으며, 자본은 자본을 모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본을 집중화시켜 나간다. 이러한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회이며 국민도 원하지 않는다. 현대사회는 지식사회이며 정보사회이다. 지식의 결집은 지식재산권으로 나타나며 그 중의 일부가 특허라는 권리이다. 특허라는 독점권에 대하여 안식년과 희년 정신이 반영될 수 있다면 안식년 규례와 희년 규례는 성경의 현대적인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6년 동안 소출을 거두라는 말씀과 함께 다른 통계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6~10년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V. 결론

유럽 각국들이 특허제도를 도입한 이후 특허권에 대한 독점반대와 19세기말 공리주의적 견해가 대세를 이루었으나, 이어 일어난 세계공황과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및 국수주의의 대두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국가는 지식재산권제도를 도입하거나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국가가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

가산업 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기능은 19세기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 장점이 더 컸기에 지금까지 존속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특허제도의 기능이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특허분쟁의 발생, 특허괴물의 등장, 인류의 건강권과 의약품 관련 특허 문제, 특허권의 한계 등 제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특허제도가 19세기를 지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장점보다는 오히려 폐단이 더 크게 드러나고 있으므로 특허권의 권리 보호기간을 현재 20년에서 최소보호 기간만큼만, 예컨대, 6~10년 정도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특허는 발명과 발견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다. 과학적 호기심과 인류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욕망은 전체 인류 역사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한 바 있다(The Financial Times, 2001: 20). 실제로 세계 전역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별다른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있으며, 특허 독점권에서 나오는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 없이 진행되고 있다(Chang Ha-Joon, 2008). 앞의 “1. 발명은 어디에서 오는가?”에서도 언급한바 있는 20세기의 중요발명들이 특허를 받지 않은 것이 대단히 많으며, ‘호박고구마’⁶⁾나, 대부분의 상품이나 홍보지 등에 부착되어 있어 흔히 볼 수 있는 ‘QR 코드’와 같은 것도 특허를 받지 않은 발명품들이다. 다시 말하면, 특허권이 현재와 같이 20년으로 길지 않아도, 또한 강력하게 특허보호정책을 하지 않아도 혁신적 기술개발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에리히 프롬은 인간의 합리적 행위는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는 그 동기가 사랑인가, 사욕인가에 있다고 본다. 사욕에 기초한 행위는 타인의 필요나 이해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이다. 사욕은 욕심에 그 뿌리를 두고, 절제를 모르고, 끝없는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사욕은 사랑의 결핍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을 사랑할 줄 모른다(Erich Fromm, 1939: 16). 과도한 사욕은 사회를 불균형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자신의 이익에만 충성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전체적 파급효과는 전혀

6) 정작 ‘호박고구마’는 특허를 받지 않았으나, 호박고구마를 이용한 ‘고구마 함유 즉석식품 제조방법 및 그를 이용하여 제조된 고구마 함유 즉석식품’(특허출원인: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태안군, 특허번호 10-1076702), 호박고구마를 이용한 식혜 등 식료품들이 특허로 출원되고 있다.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를 가능하게 만들고 전체 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결국 이기심이 누구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가에 따라서 경제행위는 다르게 나타난다. 사랑이 이기심을 지배하면 경제행위는 윤리적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사욕이 이기심을 지배하면 경제행위는 타인과 사회는 의식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경제동물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며, 경제사회는 투기가 난무하고 적자생존의 법칙이 절대법칙으로 군림하게 된다(황의서, 2010: 188).

필자는 특허제도를 경제행위로 보고 경제행위가 사랑에서 기인해야 한다고 하는 시각에서 본 논문을 시작하였다. 특허제도를 공익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특허제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행위를 할 때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사랑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서로 간에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시각도 발생하지 않는다.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은 제3의 기관, 이를테면 정부나 사회복지단체가 사회적·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을 많이 가진 자가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경제적 불균형을 바로 잡기는 어렵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기심을 자연법칙에 기초한 자연현상으로 이해하고, 사랑과 분리시켜왔다. 이기심을 사랑과 분리된 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하면서 경제학에서 윤리적 요소는 배제되어 왔다. 규범적 요소가 제거된 후에 경제학은 경제공학의 대상이 되었고, 오직 합리성에 기초한 이윤추구 내지는 효용 극대화만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사랑이 배제된 곳에 사욕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기심은 사욕과 결합되고 비윤리적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비윤리적 경제행위들은 시장실패 내지는 교환경제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정당화시켜왔다. 최근 금융위기가 촉발되면서 경제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윤리적 요소를 배제시켜온 경제 분석의 전통은 비윤리적 행위들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올바른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황의서, 2010: 202).

현대의 특허제도에 전통적 경제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특허제도에 있어서 규범적 요소들을 고려한 새로운 재조명과 접근이 필요하다. 하드특허제도⁷⁾에서 소프트특허제도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하드특허제도로는 특허제도의 제문제점을 극복

7) 하드특허제도는 대표적인 예로 강력한 특허제도를 구사하고 있는 미국의 프로 특허(Pro-patent)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소프트특허제도는 이에 대한 반대개념이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자기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승화해 갈 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들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곽민섭 (2009). 『최근 판례동향 및 소송실무(지적재산권 침해소송 실무와 최근의 판례동향)』. 대전: 특허심판원.
- 권미란 (2009). “건강권을 넘어선 재산권, 이에 맞서는 의약품 접근권 투쟁.”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86. 101-104.
- 김상국·박현우 (2012). “피인용특허수명(CLT)기반의 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산출 개선방법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연구』. 20(2). 49-74.
- 김원준 (2012). 『산업재산권법』. 서울: 도서출판 오래.
- _____ (2013). 『특허법』. 서울: 신론사.
- 김홍섭 (2014). “존 웨슬리의 경영, 경제 사상과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2(1). 77-102.
- 나중갑 (2005). “특허권의 본질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17. 31-72.
-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 배진용 (2008). “특허권 관리회사(Patent Troll)의 정의와 탄생배경.” 『지식재산 동향』. 102. 3-25.
- 손경한 (2005). 『신평특허법론』. 서울: 법영사.
- 심미랑 (2011). “배타적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의 개념에 관한 연구.” 『仁荷大學校 法學研究』. 14(2). 79-112.
- 유선희 외 (2006). “특허인용분석을 통한 기술분야의 수명예측에 관한 연구.” 『韓國經營科學會誌』. 31(4). 1-11.
- 이기영 외 (2013). “문제해결 과정별 그룹의 창의성 발현에 관한 실증연구.” 『東西研究』. 25(2). 97-131.
- 이두형 (2013).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의 현황 및 전략적 시사점 - 한국과 미국에서의 스마트폰 특허분쟁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정책 IP Policy』. 17. 77-100.
- 이성상·임소진 (2013). “특허의 경과기간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과 시사점.” 『지식재산연구』. 8(2). 39-56.
- 이철희 (2010). “나라별로 본 특허제도의 역사.” 『TTA Journal』. 128. 138-139.
- 이춘성 (2008).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 『라브리선교회』. 1-11.
- 임윤혜 (2003). “특허피물 관련 분쟁대응 현황과 과제.” 『ISSUE & FOCUS on IP』. 1-6.
- 임태수 (1991). “희년의 의미와 그 현대적 적용.” 『기독교사상』. 11(395). 105-124.
- 전승표 외 (2012). “생존곡선을 활용한 잔존 인용특허 수명 추정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15(4). 745-765.
- 정진근 (2008). “특허권의 본질과 한계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50. 2-21.

- 조재신 (2012). “한·미 FTA 관련 개정 특허법에 대한 고찰.” 『法學論叢』. 32(3). 49-83.
- 최민영 (2005). “[월드리포트]지적재산권은 ‘인류의 적.’” 『주간경향』. 648. 1.
- 특허법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청 (2005). 『한국의 특허동향』.
- 특허청 (2013). 『NPEs 동향 이슈보고서』.
- 현병환 (2010). “국내 신약개발 R&D 활성화를 위한 신약개발 현황 및 신약개발비 분석.”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황희서 (2010). “시장경제와 사랑.” 『신앙과 학문』. 15(1). 185-205.
- 황희영 (2009). “성경적 경제학의 재구축을 위한 인식 체계의 탐색.” 『신앙과 학문』. 14(1). 261-296.
- 吉藤辛朔 (2005). 特許法概説. Yuhikaku Publishing Co., Ltd.
-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2005). 『特許法概説』. 서울: 대광서림.
- Adam Mossoff (2007). “WHO CARES WHAT THOMAS JEFFERSON THOUGHT ABOUT PATENTS? REEVALUATING THE PATENT “PRIVILEGE” IN HISTORICAL CONTEXT.” *Cornell L. Rev.* 92. 953-1012.
- A research report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Care Management Research and Educational Foundation (2002). “Changing Patterns of Pharmaceutical Innovation.” *NIHCM FOUNDATION*. 8.
- Chang Ha-Joon (2007). *BAD SAMARITANS*. EYA.
- 이순희 역(2008). 『나쁜 사마리아인들』. 서울: 도서출판 부키.
- Cedric A. D’Hue. *Disclosing an improper verb tense: Are scientists knaves and patent attorneys jackals regarding the effects of inequitable conduct?*, 14 *U. Balt. Intell. Prop. L. J.* 121 (2006). 145.
- Chien, Colleen V., Patent Trolls by the Numbers (March 13, 2013). Santa Clara Univ.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08-13. 1.
- Erich Fromm (1939). “Selfishness and Self-love.” *Journal for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cess* Vol. 2. 507-523.
- Hendrik Krabbendam (1989). *Biblical Principles and Business: Foundations*.
- 로고스경영연구원 역 (2005). 『성경의 경영원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James J. Gallagher. 1975. *Teaching the gifted child*, 2nd Ed, Boston: Allyn & Bacon.
- Matt Ridley (2010). *THE RATIONAL OPTIMIST: how prosperity evolves*.

- 조현욱 역 (2010). 『이성적 낙관주의자』. 경기과주: 김영사.
- N. Gregory Mankiw (2005). *Principles of economics*. South Western College Pub.
- 김경환·김종석 역 (2013). 『맨큐의 경제학』. 서울: 센게이지러닝코리아(Cengage Learning).
- Richard S. Crutchfield. 1961. “The Creative process.” In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The Creative Person. University of California Alumni Center. Lake Tahoe. VI-1-VI-16.
- Adam Smith (1976).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Oxford.
- 박세일·민경국 역 (2012). 『도덕감정론』. 서울: 비봉출판사.
- SuziePark (2004). “Asia Press Tour 합종연횡으로 신기술 경쟁력 강화.” 『반도체네트워크』. 1.
- Teresa M. Amabile. 1983.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New York: Springer-Verlag.
- Tim Harford·강유리 (2011). 『어댑트 : 불확실성을 무기로 활용하는 힘』. 경기과주: 웅진지식하우스.
- The Financial Times. “*Strong global patent rules increase the cost of medicines.*” February 14 2001. 20.
- Wright, Christopher J. H. *The Mission of God’s People: A Biblical Theology of the Church’s Mission*.
- 정옥배·한화룡 역 (2010). 『하나님의 선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http://darytalks.tistory.com/category/%EC%9D%98%EB%A3%8C%EB%AF%BC%EC%98%81%ED%99%94%EC%99%80%20%EB%8C%80%EC%95%88> (검색일 2014.7.16) “누구를 위한 특허인가? (글리백과 특허논쟁).”
-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8008&catmenu=m06_04_05. (검색일 20014.4.8). 특허청. “강제실시제도.”
- <http://www.ritholtz.com/blog/2012/04/smartphone-patent-battles/> (검색일 2014.4.4) SmartPhone Patent Battles by Barry Ritholtz - April 10th, 2012.
- <http://www.nikkei.com/article/DGXNZO68681150S4A320C1NN1000/>. (검색일 2014.4.7) 日本經濟新聞 2014.3.22일자. “「知財黒字」初の1兆円超 13年度、特許収入増.”
- <http://www.theguardian.com/books/2010/jul/25/capitalism-4-anatole-kaletsky> (검색일 2014.7.16) “Capitalism 4.0 by Anatole Kaletsky.”

ABSTRACT

A Christian Approach to Technical Problems for Patent

Jae-Shin Jo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changes to patent rights and research the following three aspects: social economic effects of the patent system, essence of the patent system in a biblical economics respect, and the proper direction of the patent system in the future. To recognize differences in the patent system, the origins of the patent system, the rol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were analyze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urrent discussions in moral philosophy is the negative effects of the patent system. In patent law, the aim of the patent system is defined as an incentive for an invento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industry. The patent system, however, departs from the scope of the purpose. The misusing and abusing of the patent system has produced negative effects for human beings rather than benefits.

This paper regarded the patent system as an economic action and that its activity should be based on love. From this perspective, God is necessary to resolve the problem of unbalance caused by the patent system in the social economics area. Thus, new approaches to analyze and consider normative elements of the patent system are needed to resolv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patent system.

Key words: patent system, patent rights, duration of patent, NPE, biblical economics